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 YES 레저피아 적금 』 특약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분할해지방식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조 ~ 제 4조 (생략)</p> <p>제5조 분할인출 이 적금은 가입기간중 최종 해지분을 포함하여 5회 범위내에서 선입선출방식에 따라 분할인출이 가능하며,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</p> <p>제6조 ~ 제8조 (생략)</p>	<p>제1조 ~ 제4조 (좌동)</p> <p>제5조 분할인출 이 적금은 가입기간중 최종 해지분을 포함하여 5회 범위내에서 입금건별 균등계산 방식에 따라 분할인출이 가능하며,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</p> <p>제6조 ~ 제8조 (좌동)</p>	<p>분할해지금액 산출방식 변경,</p>

yes 레저피아 적금 특약

제1조(적용범위)

예스 레저피아 적금(이하 "이 적금"이라 함)의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한다.

제2조(가입자격)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다.

제3조(가입기간)

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한다

제4조(가입금액 및 적립방법)

이 적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, 2회차 이후의 적립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, 1일 5회 1,000만원 이내에서 정기적립 및 수시적립 할 수 있다. 단, 만기전 1개월 이내에는 추가적립 할 수 없다.

제5조(분할인출)

이 적금은 가입기간중 최종 해지분을 포함하여 5회 범위내에서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분할인출이 가능하며,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
제6조(이자)

- ① 이 적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- ② 거래처가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한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
- ③ 거래처가 만기일 후 지급청구 한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

제7조(레저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)

이 적금의 가입자는 은행이 무료로 제공하는 레저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.

제8조(갱신)

- ① 이 적금은 예금주가 만기일전 갱신 신청하는 경우 만기일(휴일인 경우는 다음 은행 영업일)에 자동갱신 처리한다. 단, 세금우대,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한 후 갱신 당시 한도초과된 경우와 압류등 법적지급제한이 있는 계좌는 갱신대상에서 제외되며 제7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
- ② 만기일후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3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고 갱신처리 한다
- ③ 갱신된 이 적금의 이자는 갱신된 날을 예금일로하여 제 6 조에 따라 적용이율을 정한다.

부칙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